

참고 1

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(근로소득세 분야)

구 분	2013년	2014년																								
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표구간 및 세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200만원 이하</td> <td>6%</td> </tr> <tr> <td>1,200~4,600만원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4,600~8,800만원</td> <td>24%</td> </tr> <tr> <td>8,800~3억원</td> <td>35%</td> </tr> <tr> <td>3억원 초과</td> <td>38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과세표준	세율	1,200만원 이하	6%	1,200~4,600만원	15%	4,600~8,800만원	24%	8,800~3억원	35%	3억원 초과	38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표구간 및 세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200만원 이하</td> <td>6%</td> </tr> <tr> <td>1,200~4,600만원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4,600~8,800만원</td> <td>24%</td> </tr> <tr> <td>8,800~1.5억원</td> <td>35%</td> </tr> <tr> <td>1.5억원 초과</td> <td>38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과세표준	세율	1,200만원 이하	6%	1,200~4,600만원	15%	4,600~8,800만원	24%	8,800~1.5억원	35%	1.5억원 초과	38%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이하	6%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~4,600만원	15%																									
4,600~8,800만원	24%																									
8,800~3억원	35%																									
3억원 초과	38%					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이하	6%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~4,600만원	15%																									
4,600~8,800만원	24%																									
8,800~1.5억원	35%																									
1.5억원 초과	38%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소득공제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소득공제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총급여</th> <th>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00만원 이하</td> <td>80%</td> </tr> <tr> <td>500~1,500만원 이하</td> <td>50%</td> </tr> <tr> <td>1,500~3,000만원 이하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3,000~4,500만원 이하</td> <td>10%</td> </tr> <tr> <td>4,500만원 초과</td> <td>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총급여	공제율	500만원 이하	80%	500~1,500만원 이하	50%	1,500~3,000만원 이하	15%	3,000~4,500만원 이하	10%	4,500만원 초과	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소득공제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총급여</th> <th>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00만원 이하</td> <td>70%</td> </tr> <tr> <td>500~1,500만원 이하</td> <td>40%</td> </tr> <tr> <td>1,500~4,500만원 이하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4,500~1억원 이하</td> <td>5%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초과</td> <td>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총급여	공제율	500만원 이하	70%	500~1,500만원 이하	40%	1,500~4,500만원 이하	15%	4,500~1억원 이하	5%	1억원 초과	2%
총급여	공제율																									
500만원 이하	80%																									
500~1,500만원 이하	50%																									
1,500~3,000만원 이하	15%																									
3,000~4,500만원 이하	10%																									
4,500만원 초과	5%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급여	공제율																									
500만원 이하	70%																									
500~1,500만원 이하	40%																									
1,500~4,500만원 이하	15%																									
4,500~1억원 이하	5%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원 초과	2%																									
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- <추가> 공제금액 : 연 5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동) -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공제금액 : 연 50만원 																								
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녀관련 소득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세 이하 : 1명당 100만원 - 출생·입양 : 1명당 200만원 - 다자녀추가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녀 2명 : 100만원 - 자녀 2명 초과 : 10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녀세액공제로 통합(자녀, 입양자, 위탁아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녀 1명 : 15만원, 2명 : 30만원 - 자녀 2명 초과 : 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※ 손자·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※ 6세 이하, 출생·입양,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																								
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로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금계좌 납입액(연금보험료) (한도) 400만원 특별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(한도) 100만원 - 의료비 소득공제 : 총급여 3% 초과 금액 (한도) 700만원, 본인 등 없음 - 교육비 소득공제 (한도) 대학생 900만원, 취학전아동·초·중·고생 300만원, 본인 없음 - 기부금 소득공제 (한도) 법정 : 소득금액 100%, 지정 : 소득금액 30%(종교 10%) - 표준공제* : 근로자 100만원 *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금계좌·특별세액공제로 전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5% 적용대상 세액공제 :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(3천만원 초과 : 25% 적용) ※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- 12% 적용대상 세액공제 : 연금계좌, 보장성보험료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표준세액공제* : 근로자 연 12만원 * 특별소득공제·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																								

구 분	2013년	2014년
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특별공제(소법 §52④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세액 소득공제 : 월세액의 50% - 공제대상자 :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자 - 소득공제 한도 : 30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월세액 세액공제(조특법 §95의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세액 세액공제 : 월세액(750만원 한도)의 10% - 공제대상자 : 총급여액 7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자 - 세액공제 한도 : 75만원 ※ 2014.1.1.부터 지출분부터 소급하여 세액공제 적용
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 보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,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,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보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주택 세대원*도 공제 적용 *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,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제가능 차입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·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※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 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안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동) - 전세계약을 연장(갱신)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부부터 전·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-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
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간 3.4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간 2.9%(2014.3.14.이후 차입분부터)
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근로소득세액공제* 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0만원 *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: 산출세액×55%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: 275,000 + (산출세액 -50만원) × 3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 66만원 - (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) 63~66만원* * 66만원 - (5,500만원 초과 급여액 × 50%) - (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)50~63만원* * 63만원 - (7,000만원 초과 급여액 × 50%)
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	<p><신 설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금계좌 납입금 납입시기 전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 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
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 (연금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)
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 (금액 기준 삭제)
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학교등 구입) 도서구입비 + 재료비 - (학교외 구입) 초·중·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학교등 구입) 도서구입비 ※ 재료비 제외 - (좌 동)
개인의 벤처기업 투자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출자·투자 대상) 벤처기업 - (소득공제율) 출자·투자액의 30% - (공제한도) 종합소득금액의 40% - (소득공제 종합한도) 2,500만원 적용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출자·투자 대상) 벤처기업,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- (소득공제율) 5천만원 이하 출자·투자액 : 50% 5천만원 초과 출자·투자액 : 30% - (공제한도) 종합소득금액의 50% - (소득공제 종합한도) 2,500만원 적용 제외 다만,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

구 분	2013년	2014년
정치자금기부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· 소득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만원 이하 : 기부금의 100/110 세액공제 - 10만원 초과 : 소득공제 적용 ◦ 공제한도 : 종합소득금액 10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만원 이하 : 기부금의 100/110 세액공제 -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: 기부금의 15% (3천만원 초과 : 25%) 세액공제 ◦ 공제대상금액 한도 : 종합소득금액 100%
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정기부금 : 3년 - 지정기부금 : 5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정기부금 : 5년 - (좌동)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제금액 : 총급여 25%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- 공제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용카드 : 15% ·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: 30% · 전통시장·대중교통비 : 30%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 - 공제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300만원 · 전통시장·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- 적용기한: '14.12.31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제금액 : 총급여 25%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- 공제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용카드 : 15% ·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: 30% · 전통시장·대중교통비 : 30% · '14년 하반기, '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·대중교통이용분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'13년 사용분의 50%보다 증가한 금액* : 4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13년 대비 '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- 공제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좌동) · (좌동) - 적용기한: '16.12.31.
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- <신설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세액공제 전환 전에 지출한 이월 기부금의 공제방식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동) - '13.12.31.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
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7% 단일세율 적용(비과세, 공제 등 미적용) - <신 설> - <신 설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과세특례 제외 대상자 : 고용기업과 특수관계(경영지배관계, 친족관계)에 있는 근로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다만,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- 과세특례 적용기한 :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만, '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'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감면비율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적용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 - <추가> ◦ 지원내용 :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% 감면 ◦ 적용기한 : '13.12.31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적용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동) -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 ◦ 지원내용 :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%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'14.1.1.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종전규정(감면비율 100%)을 적용 ◦ 적용기한 : '15.12.31.(2년 연장)
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제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영상 어려움*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년 대비 매출액·생산량 10%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채고량 50% 이상 증가 -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-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- <추 가> ◦ 소득공제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금감소분 × 50%(한도 1,000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제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삭 제> - (좌 동) - (좌 동) -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◦ 소득공제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

구 분	2013년	2014년
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- 분기별 21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- 분기별 300만원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가입대상 :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,000만원 이하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 ◦ 펀드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산총액 40%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- 연 납입한도 600만원 - 계약기간 10년 이상 ◦ 과세특례 : 10년간 연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 (최고 240만원 소득공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공제 제외 ◦ 적용기한 : '15.12.31까지 가입분 ※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
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제한도 : 2천5백만원 ◦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, 청약저축, 우리사주조합, 창투조합 등 출자,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, 신용카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좌 동) ◦ 한도포함 소득공제 주택자금, 청약저축, 우리사주조합, 창투조합 등 출자(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),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, 신용카드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

